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2009.4.2)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세부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9조)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서울특별시마포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변경

나.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1)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따른 도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에 적용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

2)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
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8조 및 제
8조의2)

1)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 구 수입증지로 함.

2)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증지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함

라. 기존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이 “삭제”
되는 사항(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 도로명변경, 도로명시설 설치 등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이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전반)

3. 개정근거

「도로명주소법」 - 2009. 4. 1 개정,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2009. 7. 30 개정, 대통령령 제21656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11.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제작·설치”를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재교부”를 “재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4장(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각각 “법에 따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련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포구”를 “구”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중 “도로명시설” 및 “도로명 관련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반영”을 “계상”으로 하며, 제16조 중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법에 따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광고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

게 할 경우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내표지판”을 각각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마포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마포구”를 “구”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임기만료전”을 “임기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를 “도로명 주소담당부서”로, “도로명사업 업무담당팀장”을 “도로명주소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u>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u>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u>도로명주소대장규칙</u>」 및 「<u>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u>」에 <u>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2장 도로명의 변경</p>	<p>< 삭 제 ></p>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u></p>	<p>< 삭 제 ></p>

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 삭제 >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

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주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구

<삭 제>

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

적으로 각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 삭제 >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 삭제 >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 삭 제 >

< 삭 제 >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입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

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마 포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 삭제 >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한다.

②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 삭제 >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생략)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4. (생략)

제9장 마포구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4. (현행과 같음)

제9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마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생략)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생략)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삭제 >

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명사업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생략)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생략)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토의 및 심의 결과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